



TAX FILING



2021 외국투자가를 위한 조세가이드

CONTENTS

I 한국의 조세

(1) 국세	06
(2) 지방세	06

II 외국인 투자법인의 세금

1. 법인세	07
(1) 개요	07
(2) 세무조정	09
(3) 주요 공제·감면제도	13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제도	22
2. 부가가치세	28
(1) 개요	28
(2) 영세율	29
(3) 면세	30
(4) 세금계산서	31

III 외국인 투자법인 근로자의 세금

1. 근로소득세	32
(1) 신고절차	32
(2) 소득공제	33
(3) 세율	37
(4) 세액공제	37
(5) 외국인 특례제도	41
2. 종합소득세	43
(1) 소득의 종류	43
(2) 세율	44
(3) 신고기한	44

CONTENTS

IV 외국인 투자법인 주주의 세금

1.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45
(1) 국내세법	45
(2) 조세조약	45
(3) 신고절차	46
2.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	47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47
(2) 증권거래세	48

V 법인설립·자산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1) 등록면허세	49
(2) 취득세	50
(3) 재산세	53
(4) 종합부동산세	55

VI 그 밖의 조세제도

1. 기한연장·징수유예	58
(1) 기간한정	58
(2) 징수유예	59
2.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60
(1) 경정청구	60
(2) 수정신고	61
(3) 기한 후 신고	62
3. 가산세	62
(1) 신고불성실 가산세	62
(2) 납부지연가산세	63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63

4. 세무조사	63
(1)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63
(2) 세무조사 연기	64
(3) 세무조사 기간	64
5. 세법해석	65
(1) 서면질의	65
(2) 사전답변	65
6. 조세불복과 행정소송	66
(1)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66
(2) 이의신청	67
(3)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67
(4) 행정소송	68
7. 국세상담	69
(1) 전화상담	69
(2) 인터넷상담	69



한국의 조세



- ◆ 한국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지고, 그 중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세금은 법인세(법인), 소득세(개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해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세목은 세수의 규모도 가장 커서, 중앙정부 세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책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 설립 및 주식양도, 사업용 자산(건물, 토지 등) 취득 및 보유 시 납부하는 아래의 세목들을 위주로 기술하였습니다.

◆ (1) 국세

- ①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②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③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④ 증권거래세 : 주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로 과세하는 세금
- ⑤ 종합부동산세 : 주택 및 토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 (2) 지방세

- ① 등록면허세 : 법인 설립 및 자본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② 취득세 :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③ 재산세 : 부동산 등 재산의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외국인투자법인의 세금



1. 법인세

◆ (1) 개요

1) 납세의무자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의 유형에 따라 납세범위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주로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국내에서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이므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자]

구 분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	×	×

2) 법인세 종류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야기합니다.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해산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이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세율

법인세 세율은 10%~25% 누진세율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억 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억 2,000만원

5) 신고기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설립된 법인들의 사업연도는 대부분 1.1.~ 12.31이며,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들은 매년 3.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6) 제출서류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
-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2)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내용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 :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주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금과 공과금 등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벌과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외국의 법률에 의해 납부하는 벌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인건비 한도초과액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달리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한도 내에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의 경우,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이사회결의로 결정된 상여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정관 등에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경우,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이사회결의로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정관 등에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다. 사택유지비

임직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임원 중 출자임원(지분 1% 이상 보유)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접대비 한도초과액

접대비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일정한 한도액을 넘어서 지출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지출액 - 접대비 한도액

② 접대비한도액(㉓+㉔+㉕)

㉓ 기본한도 : 12,000,000원(중소기업 36,000,000원)

㉔ 수입금액 한도

수입금액	적용률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 0.3%
100억원 이상 ~ 500억원 이하	수입금액 × 0.2%
500억원 초과	수입금액 × 0.03%

*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률에 10%만 인정합니다.

㉔ 문화접대비 한도액 = min(㉔, ㉕)

㉔ 문화접대비 지출액

* 도서·공연 등 국내 문화관련 지출액

㉕ 위 일반접대비(㉑+㉒)의 20%

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거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다음해 미달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감가상각비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시기의 차이만을 일으킬 뿐이며 감가상각비는 최종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바. 사적사용경비

법인의 업무용카드로 개인적인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사용금액은 그 카드의 사용자가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상여,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 업무무관자산 비용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취득한 자산에 지출된 비용과 그 유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대손충당금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초과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당기말 세무상 매출채권 $\times \max[\text{전년도 대손실적률}(\text{당기 대손금} \div \text{전기말 세무상 채권금액}), 1\%]$

자. 업무무관가지금금 등의 인정이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임직원인 경우 상여,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차.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법인이 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금금 및 업무무관자산에 법인 자금을 지출한 경우,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등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손금불산입액 = 이자비용 $\times (\text{업무무관가지금금 및 업무무관자산 적수 합계액} \div \text{총 차입금 적수})$

2)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주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산의 평가이익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평가증 외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수입배당금액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지분에 따라 일정액(30%~100%)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금 이자

법인이 국세를 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이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 이자는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거나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한 채무면제액이나 자산수증익은 익금항목이지만, 동 금액을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3) 주요 공제·감면제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조세정책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세액 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1) 법인세법 상 공제·감면제도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에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국외원천소득),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외국납부세액 종류

1) 직접 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세액이 대표적입니다.

2) 간접 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외국자회사(배당확정일 현재 지분 2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가 현지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의 세액 중 일정금액을 간접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text{간접외국납부세액} = \text{외국자회사 법인세액}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 간주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감면된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조세조약 상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국가별로 산정합니다.

$$\text{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외원천소득} \times \text{감면비율})}{\text{법인세 과세표준}}$$

나. 재해손실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법인세액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실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제도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업 등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는 5년 내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감면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하며,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기준 (중소기업기준) 이내일 것
2.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② 자산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3.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1) 대상

1) 창업중소기업 : 제조업 등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당시 최대주주인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구분

2)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벤처캐피탈투자기업·기술우수평가기업, 연구인력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2021년 말까지 지정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 받은 제품을 제조

(2) 감면내용

1) 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합니다.

2) 감면율

구분	기본 감면을 및 감면기간		추가 감면율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	5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x 50%(25%)
청년창업중소기업	50%	100%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5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영위하는 기업	75%(3년), 50%(2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 인천 및 경기 일부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 개요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건물 등 건축물과 차량·선박·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에서만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3) 공제액

공제액은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공제율

구분	일반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기본공제율	10%	3%	1%	12%	5%	3%
추가공제율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대상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2.12.31.까지 다음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감면율

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율	
		일반적인 감면업종	도매업 등
소기업	수도권	20%	10%
	수도권 외 지역	30%	
중기업	수도권	- (지식기반사업에 한정하여 10%)	-
	수도권 외 지역	15%	5%
성실중소기업	감면율에 1.1을 곱하여 계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 적용

(3) 세액감면액 = min(①, ②)

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x 감면율

② 감면한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x 5백만원
- ㉡ 그 밖의 경우 : 1억원

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대상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세액공제합니다.

(2)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3) 세액 공제액 : ① + ②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x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

종류	구분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30% + min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수입금액)x3배,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min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수입금액)x3배, 15%)
	일반기업	20% + min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수입금액)x3배, 10%)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max(㉠, ㉡)

㉠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공제율(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기업 25%)

*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연구인력개발비가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보다 적은 경우 ㉡ 적용



⑥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공제율

종류	구분	공제율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기업	15%(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10%(그 다음 2년 이내)
	중견기업	8%
	일반기업	$\min[\text{해당과세연도}$ $(\text{일반연구·인력개발비} \div \text{수입금액}) \times 50\%, 2\%]$

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유턴기업 세액감면)

(1) 취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시켜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액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감면요건

1) 감면 대상자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동포입니다.

2) 이전·복귀요건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① 완전복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국내로 이전한 경우

- ①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내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
- ②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② 부분복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3) 업종요건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해야 합니다.

(3) 감면율

- ① 완전복귀 :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 ② 부분복귀 :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수도권 2년) 100%, 그 다음 2년간 50%

(4)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내 폐업,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근로소득 증대세제)

(1) 개요

내국인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근로소득 증대기업

-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 평균임금증가율보다 클 것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① 임원
- ②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③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⑥ 단시간근로자



(3)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증가분 ×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1) 개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2) 공제액

구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 수 증가	400만원	8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0원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3) 사후관리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내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 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 합니다.

(2) 경력단절여성

- ① 해당기업 또는 동종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 교육의 사유로 인해 퇴직하였을 것
- ②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③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 공제액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 × 30%(중견기업 15%)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2) 요건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일 것
- ②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기존 공장시설을 철거,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또는 기존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공장신축시 3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 ③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을 것(한국표준분류표상 세분류 기준)

(3) 감면세액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50%

(4)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5)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폐업·해산은 3년간)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납부합니다.

- ① 공장을 이전한 날부터 3년 이내 폐업, 해산하는 경우
- ②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 ③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공장의 이전일 이후 감면받은 세액 납부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제도

1) 이전가격세제

가. 개요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독립기업)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여러 거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⑥의 방법은 ①~⑤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④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⑥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원가등의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또는 외국에서 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로 통칭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과세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에서 인정된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상대국에서도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과소자본세제

가. 개요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 자본금을 출자하는 대신 자금을 대여하고,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과다하게 비용으로 공제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소자본 세제를 두고 있습니다.

나. 적용 대상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 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적용대상입니다.

다. 손금불산입액

차입금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통합보고서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
- ②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

가.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 사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군별)**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합니다.
- **(자회사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의한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당해 자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합니다.

나. 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및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별보고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①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 ②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아래의 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4) 해외금융계좌신고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①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평가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신고의무 면제자

1. 소득세법 §3 ①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 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② 신고방법

신고대상 연도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명·주소 등 보유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이름,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 등

③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해당금액의 10%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2억원 + 해당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 6억 5천만원 + 해당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20%



2. 부가가치세

◆ (1) 개요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됩니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2) 납부세액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공급가액의 1~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 계산 흐름]

$$\begin{aligned}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text{납부(환급)세액} \\ &\text{납부(환급)세액} + \text{가산세} = \text{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text{*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nd{aligned}$$

3) 세율

부가가치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며,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신고기한

사업자는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기한
1.1~3.31	4.25
4.1~6.30	7.25
7.1~9.30	10.25
10.1~12.31	1.25

◆ (2) 영세율

1) 개요

영세율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매출세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2) 취지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와 같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반대로 국내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는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영세율 적용대상

대표적인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적인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수출

- 재화 직수출, 중개무역방식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② 용역의 국외공급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③ 선박·항공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면세

1) 개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과 같이 일부 열거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영세율과 달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화를 매입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취지

기초생활필수품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한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이 대상 재화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3) 면세 적용대상

대표적인 면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적인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① 미가공식료품(쌀, 소금, 고추장등), 수돗물, 연탄, 시내버스, 국민주택규모 주택
- ② 의료보건용역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장의용역, 산후조리, 보육용역 등
- ③ 교육용역
 -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등
- ④ 도서, 신문, 잡지, 방송
- ⑤ 토지의 공급
- ⑥ 인적용역
 - 저술, 작곡, 감독, 직업운동가, 접대부, 보험모집인, 강연료, 해설, 심사 등

◆ (4) 세금계산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전자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요적 기재사항)

- 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 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 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라. 작성연월일



외국인 투자법인 근로자의 세금



1. 근로소득세

- ◆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근로자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전년도에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했던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 (1) 신고절차

가. 원천징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할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나.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실시합니다. 매년 1월 중순 경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해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수집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과, 만약, 매월 원천징수했던 세금의 합계가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적으면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정산]

$$\text{연말정산 후 소득세 결정세액} - \text{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 \text{추가납부세액(환급세액)}$$

다. 신고기한

원천징수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법인이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반영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2)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6~42%) 구조로 되어 있어, 동일한 소득공제액에 대해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감소되는 소득세액이 커집니다.

가.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나. 인적공제

a.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다음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및 장애인 : 연령제한 없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18세미만) * 해당과세기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인 자만 공제대상입니다.

* 부양가족이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b. 추가공제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해당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1명당 100만원
- ②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200만원
- ③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연 50만원
- ④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위 ③과 중복적용 불가)

다.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등)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라. 특별소득공제

a.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b. 주택자금공제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①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지출한 주택마련저축 가입액(240만원 한도)의 40%*,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지출액의 40%의 합계액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무주택(1주택자 포함)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시 300만원~1,8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마. 신용카드공제

1)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 공제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한 금액은 40%를 공제하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서 등 사용액은 30%, 그 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를 소득공제합니다.

3) 한도액

공제한도는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100만원을 추가한도로 부여합니다.



바. 우리사주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 (외국인근로자적용x)	연 300만원 [①+②]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투자금액의 10% (개인이 벤처기업·벤처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연 300만원,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추가 (최대 6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 (3) 세율

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10%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50,400,000원

◆ (4)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가. 세액공제 금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2) 자녀세액공제

①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인 사람(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자녀의 수	자녀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1명	연 30만원
2명	연 50만원
3명 이상	연 7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자녀장려세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700만원(그 중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4) 특별세액공제

가. 보험료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납입금액의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나.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합니다.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출액의 한도 없이 공제를 적용하며, 그 외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의료비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교육비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을 의미하며,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비, 학원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학자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대학생은 900만원, 취학전아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은 300만원입니다.

라. 기부금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초과분은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까지 공제합니다.

법정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없으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30%,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30%(종교단체기부금은 1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요약]

세액공제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료비	㉔ 본인장애인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 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㉔ 한도 제한 없음 ㉔ 연 700만원 한도	15% (난임시술비 20%)	
	㉔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 + 우리사주+ 지정 15%(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 기부금	종교 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 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5) 외국인 특례제도

가.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1) 적용대상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 과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2)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9% 세율로 과세하는 단일세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 · 공제 ·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누진세율(최고세율 42%)에 비해서 단일세율(19%)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로 과세특례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인기술자 감면

1) 적용대상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외국인을 말합니다.

- ①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불 이상)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② 아래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2)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2. 종합소득세

◆ (1)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 충족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이자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14%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업종별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라. 근로소득

납세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누진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적용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의미하며 대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와 일정한 종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세율은 기타소득 종류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0%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대표적인 기타소득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 국내법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2) 세율

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10%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50,400,000원

◆ (3)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다음해 5.1 ~ 5.30일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경우 신고기한은 다음해 5.1~ 6.30일 까지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주주의 세금



1.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 ◆ 내국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세법과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체결된 조세조약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 (1) 국내세법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외국법인·비거주자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상(법인세법, 소득세법)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③ 의제배당

◆ (2) 조세조약

주주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가. 제한세율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그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제한세율은 각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5~15% 정도로 국내 세법상 20% 세율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나. 제한세율 적용배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이 비거주자 등 국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 소득은 위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또한 그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 제한세율 적용시 주의할 점

조세조약의 배당소득에 관한 제한세율을 살펴보면, 배당을 지급받는 수익적 소유자의 유형(개인, 파트너십, 법인 등), 소유지분(25%, 10% 등) 또는 소유형태(직접, 간접) 등에 따라 제한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직접 25%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5%)이 적용되고 개인이 소유하거나 법인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15%)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신고절차

내국법인이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

◆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내국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세법과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체결된 조세조약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국내세법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세법상(법인세·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기간 동안 지분 25% 미만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조세조약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주주의 거주지국에게 과세권을 부여하고 주식양도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여부는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신고절차

원천징수의무자(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과세대상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①주식 양도가액의 10%와 ②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의 방법에 따릅니다.

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 증권거래세

1) 납세의무자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주식을 양수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세율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구분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증권거래세	0.43%	0.08%	0.23%	0.1%
농어촌특별세	-	0.15%	-	-
합계	0.43%	0.23%	0.23%	0.1%

3) 신고절차

납세의무자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자산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 ◆ 다음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취득세는 전액, 재산세는 5년(3년)간 전액을 그 다음 2년간은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 등록면허세

내국법인을 설립할 때와 자본금을 증자할 때에는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서울

구분	과세표준	서울 또는 세액	비고
설립과 납입	납입액	0.4%	최소세액 112,500원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2) 종과세율

다음과 같이 대도시(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서울의 3배로 합니다.

-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서울을 적용함



3) 종과세를 적용 배제

① 대도시 종과세 제외 업종*

* 은행업, 소프트웨어 업종, 첨단기술 산업 등(지방세법 시행령 26조 참고)

②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분할

③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의 합병

4) 납세절차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2) 과세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회원권 등 각종 권리의 취득에 부과합니다.

구분	종류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3)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가 없거나 취득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③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④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⑤ 공매·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 ⑥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거래가액 검증체계에 의해 적격으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4) 취득세율

가. 표준세율

구분			표준세율
부동산	무상취득	상속	2.8%(농지2.3%)
		상속 외	3.5%
	원시취득		2.8%
	공유물 분할,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취득		1~3%
선박			2.5% ~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경차 4%)
기계장비			3%
항공기			2%
광업권 등			2%



나. 종과세율

- ①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종과세 : 표준세율 + 2% × 2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경기도

① 의정부시 ② 구리시 ③ 군포시 ④ 하남시 ⑤ 고양시 ⑥ 수원시 ⑦ 성남시 ⑧ 안양시
⑨ 부천시 ⑩ 광명시 ⑪ 과천시 ⑫ 의왕시 ⑬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⑭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 ② 대도시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종과세 : 표준세율 × 3 - 2% × 2
- 대도시(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유치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③ 사치성재산 취득에 대한 종과세 : 표준세율 + 2% × 4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 ④ 주택에 대한 종과세율
-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8%
 -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2%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 12%

5) 법인의 간주취득세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매매, 증자 등으로 취득(법인 설립시 취득 제외)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

구분	종류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나. 과세표준

$$\text{과세대상자산 총가액} \times \frac{\text{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출자의 수}}{\text{그 법인의 주식,출자의 총수}}$$

다. 세율

그 과세표준에 2%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물건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각각 적용합니다.

6) 신고기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해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토지분 재산세는 인별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합산하여 과세

다.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6천만 원 이하	0.1%	별장 4%
	1억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19만5천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 원 이하	0.2%	-
	1억 원 이하	10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3%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 원 이하	0.2%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0.3%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라. 납부기한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16 ~ 7.31	고지분 납부	시청,군청,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16 ~ 9.30		

◆ (4)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인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1)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배제 : 기숙사, 자원용주택(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

2) 공제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공제금액
주택	인별 전국합산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80억원

3) 과세표준 산정방법

가. 주택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100%

나. 토지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을 각각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
주택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별공시지가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별공시지가

4) 세율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3억원 이하	0.6%	1.2%	15억원 이하	1%	2백억원 이하	0.5%
3 ~ 6억원 이하	0.8%	1.6%				
6 ~ 12억원 이하	1.2%	2.2%	45억원 이하	2%	4백억원 이하	0.6%
12 ~ 50억원 이하	1.6%	3.6%				
50 ~ 94억원 이하	2.2%	5.0%	45억원 초과	3%	4백억원 초과	0.7%
94억원 초과	3.0%	6.0%				

5) 세액공제

가.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해당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연령별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제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세 ~ 65세	20%	5년 ~ 10년	20%	80%
65세 ~ 70세	30%	10년 ~ 15년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다.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당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전연도 해당 주택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개인	법인
일반 1·2주택	150%	해당 없음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6)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그 밖의 조세제도



1. 기한연장·징수유예

◆ (1) 기한연장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가. 신청기한

기한연장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기한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연장기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최대 9개월까지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연장 사유

-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戰禍)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종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금융회사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에 한함)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에 한함)

◆ (2) 징수유예

납세자는 사업상 위기 등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지된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기한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상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징수유예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징수유예 효과

관할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징수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압류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2.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 (1)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경정청구 사유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나.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후발적 경정청구

다음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 (2) 수정신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 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수정신고 사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나. 수정신고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 가산세 감면

2년 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감면]

구분	감면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 x 9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 x 7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 x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가산세액 x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 x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해당 가산세액 x 10%

◆ (3) 기한 후 신고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구분	감면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 ×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 ×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 × 20%

3. 가산세

- ◆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2)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3) 부정하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 ①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
- ② 수입금액 × 0.14%

◆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1일당 0.025%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부과합니다.

◆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아래의 산출금액이 가산세로서 부과됩니다.

$$\text{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3\%)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0.025\% \times \text{미납일수})$$

* 한도 : 과소·무납부세액의 10%

4. 세무조사

◆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됩니다.

1)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 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2) 정기선정 외의 조사

- 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다.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마.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 (2) 세무조사 연기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을 때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3)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피행위가 명백한 때
- 2)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4) 천재, 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5. 세법해석

- ◆ 납세자가 세법을 적용할 때 세법의 규정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법 규정에 대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없어서 납세자가 세법을 적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서면질의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 (2) 사전답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신청방법]

구분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신청기한	신청기한 제한 없음	법정신고기한 전
신청대상	세법해석 관련 일반적 사항	해당 납세자의 특정거래 (실제 발생한 거래)
신청방법	서면질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	사전해석 답변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 (팩스 불가)
	우편 접수시 보내는 곳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OOOO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	
효력	외부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세법적용 판단기준이 됨 (일반론적 견해표명)	공적견해 표명으로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 구속함 (신뢰보호원칙 적용)



[세법해석 신청제외 대상 및 반려대상]

구분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관한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4.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신청서 반려 대상	1. 신청제외대상	1. 신청제외대상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 질의	3. 신청기한 경과한 경우
	4.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의 질의	4.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5.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의 질의	5. 신청서 접수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6. 조세불복과 행정소송

-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국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1)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1) 청구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납기전징수사유 또는 수시부과사유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체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개시를 요청한 경우
-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2) 결정 및 통지

세무서장 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납세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의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무총리 산하에 조세심판원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관이 조세심판관 회의를 통해 해당 과세 건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을 위해 설치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과세건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감사원 심사청구

납세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세 건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4) 행정소송

국내 조세소송은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3심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친 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7. 국세상담

- ◆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전화 상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이 가능하며,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1588-0560) 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번 상담시 주요 메뉴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및 보안카드
- 3번 신고, 납부
- 5번 연말정산간소화
- 6번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 7번 증명발급 및 기타 세무서류

2번 세법상담

- 1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2번 부가가치세
- 3번 연말정산, 원천세
- 4번 종합소득세
- 5번 근로, 자녀장려세제
- 6번 법인세, 국제조세
- 7번 상속, 증여세
- 8번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국세기본법, 징수법
- 9번 세정에 관한 건의, 불만, 칭찬
- 0번 기타 세무상담

◆ (2) 인터넷 상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담(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이 가능하며, 유사한 상담사례(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외국투자가를 위한 조세가이드 2021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1년 01월

집 필 | 이성재

주 소 | (06792)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6490-828-8 (93320)
979-11-6490-829-5 (95320)
(PDF)

| Copyright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